

민원사무명	점용허가신청(도시공원, 녹지)				
민원내용	도시공원.녹지를 점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제38조				
주관부서	도시계획과	협조부서 (기 관)	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	처 리 기 간	15일
현장조사사항	허가내용과 동일여부 확인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	신청서 작성 ⇒ 접수 ⇒ 검토.조사 ⇒ 결재 ⇒ 결과 통지 (위임전결 : 과장)				
구 비 서 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청서 2. 사업계획서(위치도.평면도를 포함) 3. 공사시행계획서 4. 원상회복계획서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지적도(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)				
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	○ 미조성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여부 등 협의			
후 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점용료 납부	허가사항 점용료 납입	허가증 발부 이후	도시계획과	고지서 발부
수수료 및 제반경비	1. 공원녹지점용료(사유지 제외) 2. 면허세 : 면적에 따라 별도 산정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없 음				